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13
----------	------

2022. 3. 17.(목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: 정상교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2년 3월 8일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2년 3월 17일

(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정상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가. 조례 제정이유

- 지난 2019년 12월 4일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시행은 2020. 12.4.)이 제정되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.
- 그동안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운용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매해년도 불균형한 재정수입(교부금)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편성 편차가 있었음

[최근 4년간 편성액]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9년 최종예산	2020년 최종예산	2021년 최종예산	2022년 본예산	4년 평균	비고
교 부 액	124,367,351	116,179,000	94,257,000	113,741,000	112,136,088	
편성액	중장기	74,046,910	33,693,812	50,216,406	70,327,978	57,071,277
	일반	129,848,592	95,564,560	128,815,568	133,166,283	121,848,751
	합계	203,895,502	129,258,372	179,031,974	203,494,261	178,920,027

-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학교 노후건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미래학교 조성에 따른 연도별 시설사업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며, 특히 ‘그린스마트 미래학교’ 및 내진보강, 석면 교체, 샌드위치패널, 외벽벽돌보강, 드라이비트 교체 등 중·장기 교육 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.

목 차		주 요 내 용
조	표 제	
제 명		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1	목적	▶조례 제정 목적 기술
2	기금의 설치	▶기금의 종류: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
3	기금의 조성	▶기금의 조성 재원 - 교육시설법(이하 “법”) 제30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 ▶기금의 적립 규모 -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4	기금의 용도	▶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
5	기금의 관리 및 운용	▶교육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 ▶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
6	회계관계공무원	▶회계관계공무원 지정 - 기금운용관: 행정국장 - 분임기금운용관: 시설과장 - 기금출납원: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▶대장, 증빙서류, 사용계획, 결과 보고
7	심의위원회 설치	▶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-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-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- 기금의 결산 등 ▶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·운영 - 심의사항 대신 운영
부 칙		▶공포일로부터 시행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, 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

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행정국장

2. 분임기금운용관: 시설과장

3. 기금출납원: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

② 제1항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4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0조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.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31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
1. 교육시설의 안전점검,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
2.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『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』 제 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
5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6.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안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